

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33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14. 9.

제 출 자 : 달성군수



1. 의결주문

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낙동강 수변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 요구에 따라 유람선 운항의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상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제명변경 :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
- 나. 수상이용시설 및 이용대상에 따른 요금 명확화
- 다. 기존 “수상체험시설”관련 조항을 “수상이용시설”로 개정
- 라. 【별표】 이용료 개정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, 139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예산 필요 없음

다. 기타사항

- (1) 성별영향평가 : 특이사항 없음
- (2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(3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- (4) 입법예고
 - (가) 예고기간 : 2014. 8. 8. ~ 2014. 8. 28.
 - (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- (5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달성군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”를 “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수상체험시설”을 “수상이용시설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“소인”이란 36개월부터 초등학생 이하인 자를 말한다.
2. “대인”이란 중학생 이상인 자를 말한다.
3. “소형보트”란 「수상레저안전법」의 적용을 받는 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.
4. “유람선”이란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의 적용을 받는 유선을 말한다.

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.

제3조 중 “수상체험시설(이하 “체험시설”이라고 한다)”을 “수상이용시설(이하 “수상시설”이라고 한다)”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이용료 등)”을 “(이용료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(이용료) ① 수상시설의 이용료는 별표 1의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.

② 이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이용료 등의 징수)”를 “(이용료 징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체험시설의 이용료 등은”을 “수상시설의 이용료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이용료 등은”을 “이용료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체험시설”을 각각 “수상시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이용료 등은”을 “이용료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일요일”을 “토요일”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이용료 등의 면제)”를 “(이용료 면제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이용료 등을”을 “이용료를”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이용료 등의 게시)”를 “(이용료 게시)”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이용료 등은”을 “이용료는”으로 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운행시간)”을 “(운항 및 이용시간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체험시설의 운행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5시”를 “수상시설의 운항 및 이용시간은 해 뜨기 전 30분부터 해 진 후 30분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체험시설을 운행하지 아니할”을 “수상시설의 운항 및 이용을 제한할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운행”을 “운항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체험시설”을 “수상시설”로 한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운항구간) 수상시설의 운항구간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운행질서”를 “운항질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정기운행 시간외 운행”을 “운항 및 이용 시간외 이용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“체험시설”을 각각 “수상시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운행구간 내 하천”을 “하천”으로 한다.

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체험시설”을 각각 “수상시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“체험시설”을 각각 “수상시설”로 한다.

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체험시설”을 “수상시설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 본문 중 “체험시설”을 “수상시설”로 한다.

제16조 중 “「수상레저안전법」”을 “「선박안전법」, 「수상레저안전법」”으로 한다.

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

이용료

(단위 : 원)

구 분		요 금
유람선	소인	14,000이하
	대인	20,000이하
소형보트	소인	7,000이하
	대인	10,000이하
- 유람선의 경우 20인 이상 단체에 한해 요금의 20%할인 - 부가세 10% 포함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설치한 <u>수상체험시설</u>의 관리·운영과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“어린이”란 만 5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. 2. “청소년”이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. 3. “군인”이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현재 군에 단기하사관 이하 계급으로 복무하고 있는 자(공익근무요원, 의무경찰 및 경비 교도대원을 포함)로서 제복을 입거나 신분증 등으로 그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자를 말한다. 4. “어른”이란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자로서 제3호에 규정된 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. 5. “노인”이란 주민등록증이나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만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. 제3조(명칭 및 위치) <u>수상체험시설</u>(이하 “<u>체험시설</u>”이라고 한다)이 소재한 곳의 명칭은 사문진 역사공원 나루터로 하고,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사문진로1길 42-1에 둔다.	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수상이용시설</u> ----- -----. 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“소인”이란 36개월부터 초등학교 이하인 자를 말한다. 2. “대인”이란 중학생 이상인 자를 말한다. 3. “소형보트”란 「수상레저안전법」의 적용을 받는 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. 4. “유람선”이란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의 적용을 받는 유선을 말한다. 5. <삭 제> 제3조(명칭 및 위치) <u>수상이용시설</u>(이하 “<u>수상시설</u>”이라고 한다)이 소재한 곳의 명칭은 사문진 역사공원 나루터로 하고,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사문진로1길 42-1에 둔다.

제4조(이용료 등) <u>체험시설의 이용료 등</u>은 별표 1과 같다. <신설> 제5조(이용료 등의 징수) ① <u>체험시설의 이용료 등</u>은 별표 2의 이용권을 발매함으로써 이를 징수한다. ② 징수한 <u>이용료 등</u>은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하는 경우 및 제8조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<u>체험시설</u>의 이용자(이하 “이용자”라고 한다)가 <u>체험시설</u>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③ 징수한 <u>이용료 등</u>은 다음날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날이 <u>일요일</u> 또는 <u>공휴일</u>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하여야 한다. ④ (생략) 제6조(이용료 등의 면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른 <u>이용료 등</u>을 면제할 수 있다. 1. ~ 3. (생략) 제7조(이용료 등의 게시) 제4조에 따른 <u>이용료 등</u>은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. 제8조(운행시간) ① <u>체험시설의 운행시간</u>은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로 하되, 계절상황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<u>체험시설</u>을 운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.	제4조(이용료) ① <u>수상시설의 이용료</u>는 별표 1의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. ② <u>이용료</u>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<u>규칙</u>으로 정한다. 제5조(이용료 징수) ① <u>수상시설의 이용료</u>는----- -----. ② ----- <u>이용료</u>는-----. ----- <u>수상시설</u>----- ----- <u>수상시설</u>----- -----. ③ ----- <u>이용료</u>는----- ----- <u>토요일</u> -----. ④ (현행과 같음) 제6조(이용료 면제) ----- ----- <u>이용료</u>를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제7조(이용료 게시) ----- <u>이용료</u>는 ----- -----. 제8조(운행 및 이용시간) ① <u>수상시설의 운행 및 이용시간</u>은 해 뜨기 전 <u>30분</u>부터 해 진 후 <u>30분</u>-----. ② ----- ----- <u>수상시설의 운행 및 이용</u>을 제한할 -----.
--	---

1. 폭풍우, 홍수 및 그 밖의 사유로 <u>운행</u>이 위험한 경우 2. <u>체험시설</u>의 고장 등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. (생략) 제9조(운행구간) <u>체험시설의 운행구간은 사문진 역사공원 나루터에서 출발하여 왕복 1시간 이내 구간으로 하되,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.</u> 제10조(이용객 준수사항) ①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<u>운행질서</u>의 유지 및 위해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. 1. ~ 3. (생략) ②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1.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거나, <u>정기운행 시간외 운행</u>을 요구하는 행위 2. <u>체험시설</u>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,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, 그 밖에 <u>체험시설</u>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. <u>체험시설</u>의 설비나 인명구조장비 등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 4. <u>체험시설</u> 내에 폭발물, 인화물질 등을 휴대하는 행위 5. <u>운행구간</u> 내 하천에 쓰레기, 분뇨, 폐기물 등을 버리는 행위 제11조(이용의 제한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<u>체험시설</u> 이용을 거부하거나 <u>체험시설</u>에서의 퇴거를 명할 수 있다.	1. ----- <u>운</u> <u>항</u>----- 2. <u>수상시설</u>----- ----- 3. (현행과 같음) 제9조(운항구간) <u>수상시설의 운항구간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.</u> 제10조(이용객 준수사항) ① ----- ----- <u>운항질서</u>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----- --- <u>운항 및 이용 시간외 이용</u>----- --- 2. <u>수상시설</u> ----- ----- <u>수상시설</u> ----- --- 3. <u>수상시설</u>----- ----- 4. <u>수상시설</u> ----- ----- 5. <u>하천</u>----- ----- 제11조(이용의 제한) ----- ----- <u>수상시설</u> ----- <u>수상시설</u>----- -----.
--	--

1. · 2. (생략) 3.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어린이, 술에 취한 자, <u>체험시설</u> 내에서 음주할 목적으로 술을 소지한 자 4. 그 밖의 사유로 <u>체험시설</u>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 또는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2조(변상조치) <u>체험시설</u>을 이용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 1. ~ 3. (생략) 제13조(위탁운영) ① 군수는 <u>체험시설</u>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·운영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군에서 출연하거나 시설관리를 위해 설립한 기관에 대해서 우선 위탁하여 관리·운영하게 할 수 있다. ② ~ ④ (생략) 제16조(준용) 이용료 징수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며 그 밖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「수상레저안전법」,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, 「지방재정법」,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」 등을 준용한다.	1. ·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<u>수상시설</u> ----- ----- 4. ----- <u>수상시설</u> ----- ----- ----- 제12조(변상조치) <u>수상시설</u>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제13조(위탁운영) ① ----- <u>수상시설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제16조(준용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「선박안전법」, 「수상레저안전법」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---	---

참고 1

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☐ 지방자치법 제136조(사용료)

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☐ 지방자치법 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

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